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52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인 특허법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고, 변리사 시험 합격자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현행화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제2차 시험 일부 면제자의 응시과목 조정

(안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별표 1)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특허법을 포함하여 2과목을 응시하도록 함

나. 기타 미비사항 정비

(안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4항, 제16조의5제2항, 제22조의2제3호)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징계의결 결과의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변리사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등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
청사 4동

- 전자우편 : 9921292@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7,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